

반부패 정책(ANTI-CORRUPTION POLICY)

1.0 목적

Stericycle, Inc.는 사업 행동 및 윤리 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즈니스 관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지켜 나가는데 헌신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해외 부패 관행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FCPA")과 영국의 뇌물 수수법(U.K. Bribery Act 2010, 이하 "Bribery Act"), 캐나다의 해외 부패 방지법(the Canada 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ct ("CFPOA")과 브라질이 청정 기업법(the Brazil Clean Companies Act) 등 (기타 다른 적용 가능한 반부패 관련 법률과 함께 통칭하여 부르는 "반부패 법률"과 같이) Stericycle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된다. 이러한 법률 및 전 세계 여러 지역의 현지 법률은 공무원과 고객 또는 정당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자금이나 가치가 있는 어떤 것(Anything of Value)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본 정책의 목적은 Stericycle과 그 계열사 및 자회사의 반부패 법규를 준수함에 있어 필요한 행동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 적용 범위

본 정책은 Stericycle, Inc.의 팀원과 이사회 구성원, 그의 소속 법인, 자회사 및 계열사 (통칭하여 "Stericycle") 에게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제3자 대리인에게 적용된다. Stericycle의 지배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Stericycle은 본 정책 또는 실질적으로 본 정책과 유사한 다른 정책 및 관련 절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Stericycle의 팀원에게는 본 정책을 읽고, 이해하며 준수할 책임이 있다.

Stericycle의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한 헌신과 세계적 명성에 대한 헌신으로 인하여 특정한 경우 법률적 요구 사항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를 선택해 왔다. Stericycle의 개별 법인은 반부패 정책 실현에 더욱 엄격한 규칙이나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 본 정책을 준수함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 정책의 요구 사항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현지 법률의 경우, 현지 법을 우선 적용하고 준수해야 한다.

3.0 정의

반부패 법률(Anti-Corruption Legislation): FCPA와 Bribery Act, CFPOA와 브라질 청정 기업법 및 Stericycle의 기업 활동 국가에서 Stericycle에 적용 가능한 현지 법률과 같이 국제 업무 거래에 있어 적용되는 OECD의 외국 공무원 뇌물 방지 협약 (이하 "OECD 협약").

가치가 있는 어떤 것(Anything of Value): "가치가 있는 어떤 것(Anything of Value)"이란 매우 광범위한 용어로 받는 자에게 가치가 있거나 혜택, 금전 또는 기타의 특전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 (예: 자기앞 수표, 우편환, 무기명 채권, 기프트 카드), 여행 경비, 오락, 취업, 식사, 선물, 호의, 교육비, 서비스, 자선 기부, 정치 기부 및 명성 증진이나 사회적, 또는 사업적 지위 향상과 같은 무형의 이익이 해당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선 기부(Charitable Contribution): Stericycle의 모든 기금이나 시설 또는 서비스. Stericycle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위해 조성된 개인 기금 기부도 이에 포함된다.

지배 법인(Controlled Entity): Stericycle, Inc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50%를 넘는 수익 (또는 자본이나 수익권)을 실현하거나, 이사회 또는 기타 다른 지배 기구에서 50%를 초과하는 의결 권한을 가지는 법인, 또는 황금주와 같이 또 다른 형태의 지배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법인.

고객(Customer): Stericycle의 모든 현재 고객과 미래의 잠재 고객, 그리고 이의 소유주나 주주, 직원, 이사, 임원 또는 대표인을 의미한다.

급행료(Facilitating Payments):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 비자유 재량적 행정 조치를 신속하거나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 조치의 수혜자가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전형적인 소액의 금품을 의미한다. 가끔 "기름을 친다"는 속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공무원(Government Official): 정부, 부처, 기관 또는 (병원, NATO, 대학과 같이 국가 정부 소유, 운영 또는 지배 법인의 모든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그의 대행 기관 또는 공공 국제 기구의 대리인이나 대표, 임원, 이사나 직원, 또는 이러한 정부, 부처, 기관 또는 그의 대행 기관이나 공공 국제 기구를 위하여 일하거나 그의 공적 역량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여기에는 공직 후보자도 포함된다.

본 정책에 나타난 공무원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임명직 공무원뿐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할뿐만 아니라, 정부 소유 또는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정부 관리 단체의 직원과 제삼자 및/또는 계약자에게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예: 정부 소속 병원의 회계 관리 직원, 국립 대학 교수). 공무원에 대한 추가 예시는 부록 A에 나타나 있다.

제삼자 대리인(Third Party Representative): (i) 회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i) 회사를 대리하거나; (iii) 회사를 위하여 재량에 따라 행동하거나; 또는 (iv) 회사와 공동으로 행동하는 비 정규 직원이나 외부인을 직위에 상관 없이 이르는 용어. 제삼자 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그리고 해당 법인이 Stericycle을 대리하여 접촉하는 상대에 따라 해당 기업은 아래 정의된 고위험 벤더로 분류 가능하다.

고위험 벤더(High Risk Vendor, 이하 "HRV"): 국가 소유 타사 대리인; Stericycle을 대신하여 정부 대리인이나 공무원과 접촉하는 제삼자 대리인, 또는 Stericycle을 위해 정부 대리인이나 공무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비용 지불 과정을 처리하는 제삼자 대리인(예: 컨설턴트, 물류 제공업체, 판매 또는 세관 대리인). 고위험 벤더에 대한 추가 예시는 부록 A에 나타나 있다.

숙박 비용(Hospitality Expenses): 여행, 숙박, 식사 또는 여가 등 숙박이 필요한 출장 관련 비용.

4.0 소유/책임

본 정책의 소유 권한은 수석 윤리 규제 준수 담당자에게 있다. 윤리 규제 준수실로 (ethicsandcompliance@stericycle.com)로 이메일하여 본 정책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다.

5.0 정책 설명

5.1 뇌물 금지

Stericycle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뇌물의 지급이나 수령에 대해 전혀 관용하지 않는다. Stericycle의 팀원과 이사회 구성원, 및 제삼자 대리인이 공무원이나 고객, 또는 기타 타인에게 해당인의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나 부적절한 사업적 혜택을 받기 위해, 또는 Stericycle의 사업을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떤 것(Anything of Value)을 지급, 약속, 제공 또는 승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Stericycle의 팀원과 이사회 구성원, 및 제삼자 대리인이 공무원이나 고객, 또는 기타 타인에게 전부나 일부가 제공될 것을 “인지”한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가치가 있는 어떤 것(Anything of Value)을 지급, 약속, 제공 또는 승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인지”라는 단어에는 (i) 부적절한 뇌물 수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 (ii) 부적절한 뇌물 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iii) 부적절한 뇌물 수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묵살하거나, 알고도 하지 않는 행위, 알기를 거부하는 행위 및 자발적으로 모름을 자처하는 행위 역시 본 정책의 목적에 따라 “인지”하였음으로 간주한다.

마찬가지로, Stericycle 팀원과 이사회 구성원 그리고 제삼자 대리인은 Stericycle이 계획하거나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이나 리베이트, 또는 기타 부적절한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 수리, 심지어 수리 시도 조차도 하면 안된다.

공무원이나 고객 또는 기타 타인이 Stericycle 팀원과 이사회 구성원 또는 제삼자 대리인에게 가치가 있는 어떤 것(Anything of Value)을 요청한 경우, 해당인은 그러한 요청이나 청구를 거절하고 즉시 윤리 규제 준수실로(Office of Ethics and Compliance, OEC)이나 법률인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5.2 안전 비용/금품 갈취 요구

뇌물 수수자의 금품 강요나 갈취를 금지하는 본 정책의 위반은 관용될 수 있는 핑계나 방어가 되지 않는다.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특별히 드문 경우에 한하여 Stericycle 팀원과 이사회 구성원의 의사, 또는 제삼자 대리인은 정부 공무원이나 타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금품은 본 정책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발생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OEC나 Stericycle의 법무 자문 위원회(General Counsel)에 반드시 보고해야만 한다. 또한, Stericycle 팀원과 이사회 구성원, 또는 제삼자 대리인은 자신의 경비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Stericycle이 적절한 회계 처리와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5.3 급행료

FCPA와 CFPOA 같은 특정 국가의 법률이 급행료를 허용하더라도 Stericycle의 정책은 이러한 법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Bribery Act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법률로 급행료 지불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Stericycle은 급행료 지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5.4 숙박 비용

본 정책의 섹션 5.1과 반부패 방지 법률에 따라 특정 상황 하의 공무원이나 고객 또는 기타 타인의 체류 비용 지불은 금지된 결재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업무상 여행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숙박 비용 집행은 국가 매니저나 그가 지정한 특정인, 그리고 윤리 규제 준수실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의전 정책, 섹션 5.4 절차 참조)

기타 Stericycle의 정책과 윤리적 기업 운영 관행에 따라 숙박 비용은 그 대상을 막론하고 다음과 같이 집행되어야 한다.

- 현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합리적이고 진실하며 타당한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 마땅히 투명하게 기록하고 Stericycle의 회계 및 자료 시스템에 적절한 문서로 남겨야 한다.
- 본 정책의 부록 A에 별첨된 Stericycle의 사업 의전 정책 및 지침(Business Courtesies Policy and the Guidelines)을 준수해야 한다.

5.5 선물 및 판촉 물품

설령 선물의 주고 받음이 여러 문화권의 비즈니스 관행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이나 고객 또는 기타 타인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는 본 정책과 부패 방지 법안 위반으로 금지된 결재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고객 또는 기타 타인에게 권유 또는 제공되는 선물과 판촉물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야 하며 기타 Stericycle의 정책과 윤리적 기업 운영 관행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공무원에게 권유 또는 제공되는 선물과 판촉물은 국가 매니저나 그가 지정한 특정인, 그리고 윤리 규제 준수실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의전 정책, 섹션 5.4 절차 참조)

기타 Stericycle의 정책과 윤리적 기업 운영 관행에 따라 Stericycle이 제공하는 모든 선물과 판촉물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 현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크기와 가격으로 타당한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거나 적절한 계기로 제공되어야 하며, 미화 \$50(또는 이에 준하는 현지 통화 환산 금액)을 넘지 않아야만 한다.
- 마땅히 투명하게 기록하고 Stericycle의 회계 및 자료 시스템에 적절한 문서로 남겨야 한다.
- 본 정책의 부록 A에 별첨된 Stericycle의 사업 의전 정책 및 지침(Business Courtesies Policy and the Guidelines)을 준수해야 한다.

5.6 정치적 후원

Stericycle은 Stericycle PAC라는 단일 창구를 통하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후원이라고 간주될 만한 기여나 금전 제공 또는 후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Stericycle 팀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원하는 후보나 정당에 직접적으로 후원할 자유가 있지만, 이러한 개인적 후원을 Stericycle로 돌려서는 안되며 본 정책과 일관되지 않은 목적으로 후원해서도 안된다.

5.7 자선 후원

Stericycle은 반드시 자선 기금을 진실한 자선 단체에 기부하여, 적절한 자선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며, 본 정책이나 반부패 법률을 위반하는 방향으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Stericycle 기금이나 Stericycle의 이름으로 자선금을 기부할 경우, 윤리 규제 준수실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5.8 개인 후원 및 지불

본 정책의 어느 부분에서도 Stericycle 팀원이나 임원이 개인적 이유로 자신의 개인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막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Stericycle의 팀원이나 임원회 구성원은 누구도 Stericycle이나 Stericycle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본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다.

5.9 기록 유지 및 내부 회계 통제

Stericycle 팀원은 Stericycle의 회계와 (사실상 모든 형태의 회사 문서를 포함하는 모든) 기록이 회사의 모든 거래와 자산 처분의 합당한 세부 사항을 정확하면서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계정과 다른 거래 기록들은 장부에 정확하고 온전하게 기록되어야한다.

Stericycle의 어떠한 팀원도 회계 및 기타 회사 기록을 위조하는데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기록은 보고하는 업무 거래의 사실과 자산의 처분 등의 합당한 세부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공개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자금이나 자산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설립 또는 유지하여서는 안된다.

Stericycle 팀원은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지향하고 의문, 우려 또는 의심스러운 회계 관행을 적절한 관리자나 부서에 알림으로 회계 관리 및 회계 문제 대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또한, Stericycle 팀원은 Stericycle 감사관의 모든 질문에 반드시 완전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이 모든 거래를 Stericycle 정책에 따라 윤리적으로 인식하고 지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 통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5.10 제삼자 대리인

Stericycle은 회사의 제삼자 대리인을 통해 회사의 입장에서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뇌물과 기타 금품을 간접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섹션 1에 명시된 대로, 본 정책은 제삼자 대리인에게 공여하는 금전이나 기타 가치있는 어떤 것(Anything of Value)의 일부나 전부가 그 어떤 공무원, 고객 또는 기타 타인에게 부적절한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안, 제공 또는 약속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가운데에서도 이를 공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새로운 제삼자 대리인이 필요할 경우, Stericycle의 팀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 평판과 경험 및 윤리적 사업 관행을 고려하고 본 정책에 명시된 원칙에 부합하는 업무 일관성을 구현할 의지를 판단하여 제삼자 대리인을 선발한다.
- 선발한 제삼자 대리인에게 회사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알리고, 제삼자 대리인 역시 반부패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주지시킨다.
- 제삼자 대리인이 적용 가능한 반부패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다.
- 제삼자 대리인이 준수하기로 한 모든-합의사항과 벤더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조사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의사 소통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제삼자 대리인을 선정하기 전, Stericycle 팀원은 충분한 반 부패 조사를 시행하여 선발한 제삼자 대리인이 그 어떤 부패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회사가 갖도록 해야한다. 이 때 시행되어야 하는 조사는 제삼자 대리인이 시행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제삼자 대리인 자신의 과거 경험, 서비스 시행 국가, 그리고 알려진 모든 특정 우려의 유형에서 기반하는 잠재적 위험에 상응하는 것이어야한다.

제삼자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에 연루되기 전에 팀원은 최선을 다하여 윤리 규제 준수실(Office of Ethics and Compliance)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 제삼자 대리인과 연계되지 않은 은행 계좌나 법인에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적용 가능한 반부패 법률 준수에 대한 확인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고위험 벤더로 간주되는 경우 (예: 국가 소유 제삼자 대리인; Stericycle을 위해 정부 대리인이나 공무원과 접촉하는 제삼자 대리인 또는 Stericycle을 위해 정부 대리인이나 공무원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비용 지불 과정을 처리하는 제삼자 대리인)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제삼자 대리인에게에는 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위험 벤더(HRV)는 고위험 벤더 진실성 추구 과정 (High Risk Vendor Due Diligence Procedures)에 따라 윤리 규제 준수실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부록 B 참조)

제삼자 대리인과의 합의서에는 제삼자 대리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세부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계약 시한과 범위는 정당한 사업의 필요와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서에는 윤리 규제 준수실과 법률 부서가 제공하는 적절한 반부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11 합작 투자, 합병 및 취득

Stericycle는 모든 합작 투자 회자가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며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합작 투자, 합병, 또는 인수 전, Stericycle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위험 기반 반 부패 방지 실사를 요청하고, 법률 부서와 윤리 규제 준수실의 사전 거래 승인을 획득하는 등, 인수/합병 사전 사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Stericycle은 합작 투자와 합병 또는 인수 상대방이 자사가 해당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반 부패 법률을 준수해 왔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5.12 교육

본 정책 및 반부패 법률과 관련하여 Stericycle은 Stericycle의 팀 구성원과 이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제삼자 대리인에게에는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윤리 규제 준수실(The Office of Ethics and Compliance)은 업무의 특성과 Stericycle을 대리하는 역할에 따라 특정인의 경우 추가의 특별 교육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윤리 감사관실은 제삼자 대리인이 특정 반부패 교육을 받도록 제안할 수 있다.

6.0 시행

6.1 보고 절차

모든 Stericycle의 팀원과 이사회 구성원은 본 정책이나 반 부패 법률의 위반이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위반이나 위반 의심 사항은 (윤리 강령 및 규정 준수) Office of Ethics and Compliance로 보고해야 한다. 위반이나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매니저나 기타 타인도 이를 즉시 Office of Ethics and Compliance로 보고해야 한다. Stericycle 팀원과 이사회 구성원 역시 무기명으로 Stericycle 윤리 라인에 문제점을 보고하거나 우려 사항을 상의해야 한다. 전화번호는 Stericycle 사업 행동 및 윤리 강령에 나타나 있다.

사업 행동 및 윤리 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사의 사업 행위나 윤리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인지한 Stericycle의 정책이나 법률 위반 사항 신고에 있어 그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Stericycle의 정책이다.

6.2 정책 위반 결과

적용 가능한 부패 방지 법률 위반 시, 심각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이 초래될 수 있다. 본 정책 또는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준수 하지 않거나, 위반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신고 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지정된 팀원과 이사회 구성원은 연례적으로 본 정책을 읽고 그 조항의 준수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7.0 관련 정책 및 절차

사업 수행 및 윤리 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 and Ethics)

사업 의전 정책(Policy on Business Courtesies)

8.0 추가 정보 및 해석

본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윤리 규제 준수실(Office Ethics and Compliance)로 문의해야 한다. 이메일 주소: EthicsandCompliance@stericycle.com

9.0 개정/개정 이력

개정 번호	3
효과일	2017년 9월 18일
마지막 검토일	2018년 10월 10일
다음 검토일	2020년 10월

관련 법률이나 사업적 필요에 따라 더 자주 검토/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정책은 2년에 한 번 주기로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검토 시에는 본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을 제안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검토와 개정 및 이전 버전 관리의 책임은 윤리 규제 준수실에서 담당한다.